

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운영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88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5월 27일

발 의 자: 운영희, 강석주, 김영옥,
옥재은, 유만희, 이은림,
최호정, 황유정 의원(8명)

찬 성 자: 김경훈, 김규남, 김영철,
김재진, 김춘곤, 김태수,
김형재, 남궁역, 남창진,
민병주, 박상혁, 박 석,
박영한, 이상욱, 장태용,
허 훈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-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앓는 질환으로 조기에 검진하여 예방하고 꾸준히 진료하면 질환의 진행속도나 증상을 늦출 수 있음
- 이에 따라 서울시가 치매의 예방과 관리,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4조)
- 나. 시장은 효과적인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(안 제5조)
- 다. 시장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치매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라 치매예방,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치매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·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

한다.

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·단체·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효과적인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치매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
2. 치매환자 실종예방 지원
3. 초로기 치매환자 사회활동 지원
4.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(시행계획 수립 등)¹⁾, 제5조(실태조사)²⁾, 제6조(지원사업)³⁾ 등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만 확인결과 현재 기추진사업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 희 선
추계세제팀장	김 중 현
추계분석관	손 제 승

☎ 02-2180-7954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-
- 1)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 요청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
 - 2)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서 치매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시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
 - 3) [기시행 사업]
 - 2024 치매치료 및 관리비 지원(전환사업) : **2,231,667천원**
 - 서울시 사회적 약자(치매환자)와의 동행을 위한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지원계획(공간정보담당관-1433, 2024. 1. 31.)(붙임 참고)
 - 광역 치매센터 운영 : **1,368,200천원** (국비 511,943천원 / 시비 856,257천원)
 - 초로기 치매환자 위한 초록기억카페 1호점 개소
 - 40대~50대 초로기 치매환자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
 - 2024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: **877,500천원**

- 사회적 약자(치매환자)와의 동행을 위한 -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지원계획

공간정보담당관: 서미연 ☎2133-2830 지도서비스팀장:도찬구 ☎2855 담당:조선희 ☎2857

사회적 약자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실종방지과 안전돌봄을 위해 단말기(배회감지기)를 보급하고 사용료를 지원하여 스마트 복지 서비스를 제공

I

추진개요

□ 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0조(정보격차 해소)
 - 정보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의 운영비 지원 가능
- 사회적약자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업무협약(서울시-SKT, '20.6.11.)
 - 정보취약계층인 치매환자에게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단말기 및 통신비 지원

□ 추진경과

- '12.3월 : 고령 친화도시 실행계획(u-서울안전서비스 제공)
- '15.9월 : 초등학생 지원이 중복되어 '서울시교육청'으로 업무이관
- '18.1월 : 사회적 약자 안전서비스로 사업명 변경, 단말기교체(KT, LG)
- '20.6월 : 통신업체 변경 및 신형단말기 보급(SKT)

□ 추진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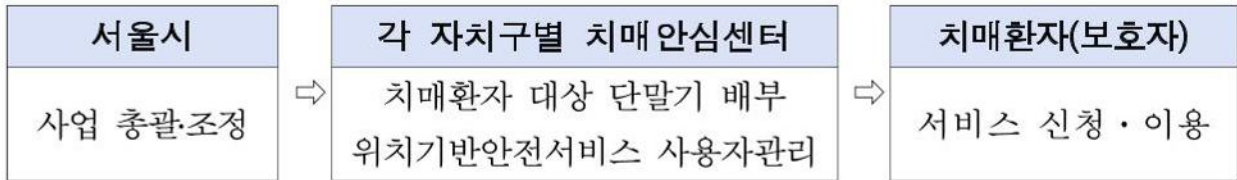
- GPS 수신 한계를 극복, 실내위치까지 감지하는 등 측위 정확도 강화
- 배회감지기 확대 보급으로 보다 많은 치매환자에게 사용기회 제공
-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사용자(보호자 포함)의 개인정보 보호 철저
-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사용자 만족도조사 실시 및 사업 추진시 반영 등

II

운영현황

□ 사업개요

- 주요기능 : 기존(이동경로, 현재위치, 긴급호출, 안심존 이탈알림) + 추가(실내위치 감지(GPS한계 극복) + 돌봄기능(심박, 낙상))
- 보급기준 : 서울시 거주, 배회경험이 있거나 치매환자로 진단받은 자
- 보급대상 : 7,392명(추정) ※ 장기요양등급(5등급) 6,728명/ 인지지원등급 664명
- 보급체계



SK텔레콤(협력사 - 네오시스) : 단말기 운영지원(수리 등), 서비스 모니터링

□ 단말기 지원현황: 1,865명 - 보급률 25%

(단위 : 명)

구분	2023	2022	2021	2020
계	1,865	1,595	1,825	2,195

□ 개인정보 파일

(단위 : 건)

개인정보 처리시스템	개인정보파일	정보주체수	개인정보항목	비고
- (PC, 종이문서)	위치기반 안전서비스 배회감지기 수령자 명단, 신청서	3,520건	사용자 및 보호자 :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	보유기간 : 서비스 이용 종료시까지

자료 : 서울시 디지털정책관 (공간정보담당관-1433, 2024. 1. 31.) 발췌